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배숙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088
----------	------

발의연월일 : 2016. 12. 2.

발의자 : 조배숙 · 김관영 · 김광수  
김삼화 · 김수민 · 김종회  
유성엽 · 이용호 · 정동영  
정인화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스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그 가스용품에 가스용품의 제조자, 용도, 사용 방법, 보증기간 등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가스용품의 제조일자는 표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소비자가 언제 제조된 가스용품인지 알 수 없으며, 안전과 밀접하게 관계된 가스용품의 경우 제품의 노후화로 인하여 국민의 안전에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실정임.

이에 가스용품 표시 대상에 제조일자를 추가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안전한 가스용품 사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0조).

법률 제 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4항 중 “용도”를 “제조일자, 용도”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스용품 제조일자 표시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하거나 수입한 가스용품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0조(가스용품의 안전성 확보 등) ① ~ ③ (생 략)</p> <p>④ 가스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외국가스용품 제조자를 포함한다)는 그 가스용품에 가스용품의 제조자, <u>용도</u>, 사용 방법, 보증기간 등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p> <p>⑤ (생 략)</p>	<p>제40조(가스용품의 안전성 확보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p> <p>-----</p> <p>-----</p> <p>-----제조일자,</p> <p><u>용도</u>-----</p> <p>-----</p> <p>-----.</p> <p>⑤ (현행과 같음)</p>